

대법원 2024도157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재등) 등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관실(02-3480-1451)

피고인 1은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으로서 재직 중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2, 3을 비롯한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들과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① 현금 1억 원 수수, ② 변호사비 5,000만 원 대납 또는 요구·약속, ③ 변호사비 2,200만 원 대납, ④ 조직관리비 7,800만 원을 수수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계열회사 대표이사로 선임된 피고인 6으로부터 ⑤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수수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 1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변호사비 5,000만 원 요구·약속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1이 구체적으로 채무나 비용 지출을 면하지 않은 이상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직접 받을 것을 요구·약속한 것과 같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1, 6에 대한 공소사실인 황금도장 수수 및 공여 부분에 관하여 황금도장 등의 증거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원심을 파기·환송함(대법원 2025. 4. 10. 선고 2024도15789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피고인들의 지위

▣ 피고인 1

-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으로 재직하던 금융회사 임직원

▣ 나머지 피고인들 및 공범

- A는 신용공제대표이사, 피고인 2는 지도이사, 피고인 3은 전무이사로써 각각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상근이사들
- 피고인 4, 5는 피고인 1의 비서실장으로 순차 근무한 사람들, 피고인 6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계열회사인 X 회사의 대표이사

나.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1 [특정경제범죄법위반(수재등)]

▣ 현금 1억 원 수수

- 피고인 1은 2022. 7.경 A에게 1억 원을 요구하여 그 요구를 전달받은 Y 회사 운영자 B로 하여금 현금 1억 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2022. 8. 31.경 A로부터 B가 마련한 현금 1억 원을 전달받아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였음

▣ 변호사비 5,000만 원 대납

- 피고인 1은 2021. 3.경 A의 소개로 이○○ 변호사와 선임료 1,000만 원에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A에게 변호사비 대납을 요구하여 B에게 피고인 1의 요구가 전달되도록 한 다음, A로부터 B가 제안한 Y 회사의 자문계약 형태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을 보고받아 승낙함
- [주위적 공소사실] B로 하여금 2021. 4. 22.경 이○○ 변호사에게 피고인 1이 지급해야 할 변호사비용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대납하도록 하여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였음
- [예비적 공소사실] 변호사비를 A, B로부터 대납받기로 약속하였으며, 이에 B가 2021. 4. 22.경 이○○ 변호사에게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요구하고 수수하기로 약속하였음

▣ 변호사비 2,200만 원 수수

- 피고인 1은 2022. 3.경 피고인 2가 소개한 법무법인을 추가 선임하고, 그 무렵 피고인 2, 3 및 A로부터 착수금을 대신 납부하겠다는 보고를 받아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착수금 2,20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함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였음

■ 황금도장 2개 수수

- 피고인 1은 피고인 6을 X 회사의 대표로 내정한 직후인 2022. 8. 23. 경 사택에서 피고인 6으로부터 자신과 처의 이름이 각각 새겨진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이하 '이 사건 황금도장')를 받아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였음

■ 각출금 7,800만 원 수수

- 피고인 1은 2021. 3.경부터 2023. 4.경까지 비서실장 피고인 4, 5를 통해 피고인 2, 3 및 A으로부터 합계 7,800만 원을 교부받아 경조사비, 직원·부녀회 격려금, 피고인 1의 조카 축의금 등 비용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였음

(2) 피고인 2, 3 [특정경제범죄법위반(증재등)]

■ 변호사비 2,200만 원 공여

- 피고인 2, 3과 A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법무법인에 피고인 1의 변호사비 착수금 2,2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금품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였음

■ 각출금 7,800만 원 공여

- 피고인 2, 3은 A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1. 3.경부터 2023. 4.경까지 피고인 4, 5를 통해 피고인 1에게 합계 7,800만 원을 교부하여 경조사비, 직원·부녀회 격려금, 피고인 1의 조카 축의금 등 비용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금품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였음

(3) 피고인 4, 5 [특정경제범죄법위반(수재등)방조]

■ 각출금 7,800만 원 수수방조

- 피고인 4는 2021. 3.경부터 2022. 2.경까지, 피고인 5는 2022. 3.경부터 2023. 4.경까지 위와 같이 각각 피고인 1의 회장 재선을 위한 조직관리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2, 3 및 A로부터 돈을 받아 관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피고인 1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음

(4) 피고인 6 [특정경제범죄법위반(증재등)]

▣ 황금도장 2개 공여

- 피고인 6은 위와 같이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황금도장 2개를 건네주어 직무에 관하여 금품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였음

2. 소송경과

가. 제1심 ➡ 일부 유죄, 일부 무죄

- ▣ 피고인 1: 징역 6년 등(일부 무죄)
- ▣ 피고인 2, 3: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일부 무죄)
- ▣ 피고인 4, 5, 6: 각 무죄

나. 원심: 일부 유죄, 일부 무죄

- ▣ 피고인 1: 징역 6년 등(일부 무죄)
- ▣ 피고인 2, 3, 4, 5: 항소기각
- ▣ 피고인 6: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공소사실	제1심	원심	
1.	현금 1억 원 수수 (A, B 공여)	유죄	유죄	
	변호사비 5,000만 원 대납 (A, B 공여 / 약속)	(주위적) 수수	무죄	이유무죄
		(예비적) 요구·약속	-	유죄
	변호사비 2,200만 원 수수 (피고인 2, 3 및 A 공여)	유죄	유죄	
	황금도장 2개 수수 (피고인 6 공여)	무죄	유죄	
각출금 7,800만 원 수수 (피고인 2, 3 및 A 공여)	무죄	항소기각		
2.	변호사비 2,200만 원 공여	유죄	항소기각	
3.	각출금 7,800만 원 공여	무죄	항소기각	
4.	각출금 7,800만 원 수수 방조	무죄	항소기각	
5.	각출금 7,800만 원 수수 방조	무죄	항소기각	
6.	황금도장 2개 공여	무죄	유죄	

다. 원심의 판단 요지 (위 표의 음영 부분)

▣ 피고인 1의 변호사비 5,000만 원 대납 관련 예비적 공소사실

- 피고인 1이 변호사 이○○과 선임료 1,000만 원에 선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그 비용이 적다고 생각하여 A에게 '5,000만 원 정도는 주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한 사실, A가 B에게 피고인 1의 변호사비 대납 요청을 전달하자 B는 회사 Y와 자문계약 형태로 변호사비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납하겠다고 답한 사실, A는 피고인 1에게 B의 이러한 대답을 보고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1이 A, B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요구하고 이를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보아,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

▣ 피고인 1, 6의 황금도장 수수 및 공여 부분

- 이 사건 황금도장이 1차 압수수색영장의 범죄혐의사실과 객관적,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피고인 1의 변호사비 5,000만 원 대납 관련 예비적 공소사실
 - 요구·약속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등)죄에 있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에 관한 법리의 적용 여부
- 피고인 1, 6의 황금도장 수수 및 공여 부분
 - 이 사건 황금도장이 영장 기재 범죄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나. 판결 결과

-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피고인 6에 대한 부분 파기환송
- 나머지 부분 상고기각

다. 판단 내용

-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부 증거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 피고인 1의 변호사비 5,000만 원 대납 관련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¹⁾
 -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다른 사람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

1) 관련 법령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수재 등의 죄)

- ①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②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供與)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하도록 한 경우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은 것을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등)죄가 성립함(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643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3540 판결 등 참조)

-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2항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 위반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며, 만일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일이 없다면 이를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 제2항은 범행의 유형으로 수수뿐만 아니라 요구·약속을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요구 또는 약속은 수수의 전 단계를 이루는 행위이므로,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는 것을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접 받는 것과 같이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도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직접 받을 것을 요구·약속한 것과 같이 볼 수는 없음
- 피고인 1은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한 선임료 1,000만 원 이외에 추가 선임료 지급채무를 부담한 바 없으므로, A, B로 하여금 법률자문료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금품 등의 이익은 어디까지나 제3자인 변호사에게 귀속되는 것일 뿐이고, 피고인 1이 구체적으로 채무나 비용 지출을 면하지 않은 이상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직접 받을 것을 요구·약속한 것과 같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피고인 1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면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하기 어려움
- ▣ 피고인 1, 6의 황금도장 수수 및 공여 부분에 대한 증거능력을 다투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음.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님(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2205 판결 등 참조)

-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인지 여부는, 관련성을 요구하는 이유가 혐의사실과 완전히 무관한 별개의 범죄에 관한 증거가 압수됨으로써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가 잠탈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염두에 두고, 범죄의 속성,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 증거의 특징, 수사의 경위, 수사기관의 인식, 추가 수사의 개연성, 압수·수색의 필요성, 압수·수색을 허용할 경우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 내지 무관정보에 대한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궁극적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17385 판결 등 참조).
- 피고인 1이 서울 사택에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황금도장 등은 1차 압수수색영장 범죄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1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이 사건 황금도장 등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1차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해당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황금도장 등이 위 범죄혐의사실의 증명에 기여할 수 있는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황금도장 등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2차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 사건 황금도장을 형식적으로 반환하는 외관을 만든 후 다시 압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

성이 치유되지 않고, 2차 압수수색영장 집행 이후 진술증거나 통신내역, 입출차내역, 대금 지급내역 등 2차적 증거의 수집도 선행 절차위법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피고인 1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 원심의 나머지 유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의 신빙성 판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등)죄에서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 범위와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위헌인 법률을 적용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 피고인 2, 3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변호사비 2,200만 원 공여 부분 판단에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증재등)죄에서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